2021년 11~12월
불법어업 지도·단속 사전예고 안내문

1 목 표

"선(先) 지도, 후(後) 단속"을 통해 청렴하고 투명한 행정을 구현하고, 불법 어업 예방 및 어업인 자율에 의한 준법조업 분위기 조성

2 육·해상 지도·단속 계획

1 해 상

해역	중점 지도·단속 대상
공통	○ **어구위반, 무허가 조업 등 불법어업 집중 단속** ○ **김 양식장 유해화학물질**(무기산) **사용** ○ 트롤·저인망 어구사용 금지구역 침범 조업 ○ 대형트롤 등 공조조업, 근해채낚기 광력기준 위반 ○ 어구사용량 초과 적재 및 사용, 불법어구 제작·판매·적재 ○ 어린물고기(포획 금지기간·체장) 포획·유통·판매 - 특히, 꽃게 체장미달(6.4cm) 및 외포란 꽃게·민꽃게 ○ 소형·연안선망어업 변형어구(자루그물 부착) 사용 인망식 조업 ○ 근해안강망 세목망 사용 포획 가능 10개 어종* 외 포획 * 멸치, 반지, 밴댕이, 뱀장어, 곤쟁이, 까나리, 베도라치, 새우류, 꼴뚜기, 주꾸미 ○ 안강망·자망·통발 어구실명제 지도·단속 ○ 연안조망의 조업 금지기간, 그물코 규격 및 혼획률(30%) 위반 조업 - 금지기간: 10.1~다음 해 4.30, 그물코 규격: 25mm 이하 사용금지 ○ 연안통발의 그물코 규격위반 어구 사용 조업 - 붕장어, 낙지, 새우류, 민꽃게류 : 22mm 이하, 입구둘레 길이 140mm 이상 사용금지 - 그 밖의 어종: 35mm 이하 사용금지 ○ 연안개량안강망의 그물코 규격위반 어구 사용 조업 - 그물코 규격: 25mm 이하 사용금지 * 연안안강망, 연안낭장망 제외, 자루그물 부분 2중 이상 어망 사용금지 ○ 연·근해자망 뻗침대를 붙인 자망 사용금지(연중) - 근해: 인천·경기해역 중 주17) 바깥 쪽 해역과 전남해역 제외한 전국 해역 - 연안: 인천·경기·전남해역을 제외한 전국 해역 ○ 2중이상 자망의 승인사항* 위반 및 미승인 2중이상 자망 사용 등 * 사용 해역, 사용기간 및 시기, 사용어구의 규모와 그물코의 규격 ○ TAC 어종별 할당량 초과, 포획·채취 정지명령 위반 등

경인 충남	○ **충남해역 뻗침대 자망어구 사용 금지** ○ 조업 금지구역 위반 : 근해안강망, 근해형망, 소형선망 ○ 연안선망 허가구역 이탈 조업(도계위반) 및 부속선 어구 적재 ○ 무허가 잠수기 및 스킨스쿠버 조업 ○ 구획어업 허가받은 구획 이탈 조업
전남 전북	○ **전북해역 뻗침대 자망어구 사용 금지** ○ 조업 금지구역 위반 : 근해안강망, 근해통발, 소형선망 ○ 근해형망의 조업 금지구역 위반, 변형어구 사용 및 일몰 후 조업 ○ 연안선망 허가구역 이탈 조업(도계위반) ○ 구획어업 허가받은 구획 이탈 조업
특정 해역	○ 서해5도(연평·D어장) 월선조업 및 항해(연평어장 가을어기 : 9.1~11.30) ○ 통발 등 특정해역 무단진입 조업
EEZ	○ 중국어선의 무허가 및 제한조건 위반 조업 - 하반기 중국어선 단속강화(9.1.~, 유망/10.16.~, 타망)

□ 「중국 해경법」 시행 (`21. 2. 1)

○ 중국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조업 시 중국 해경의 승선·검사·강제 압송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업 활동에 유의

<주요 내용>

- 제16조 : 해경기구는 위법 협의가 있는 외국선박에 대해 **추적 및 감시** 등의 조치 가능
- 제17조 : 불법 진입한 외국 선박에 대해 **퇴거명령·억류·강제퇴거·견인 가능**
- 제18조 : 중국 해역에서 조업하는 선박에 대해 승선검사 실시 및 도주할 경우 **요격·추격** 가능
- 제46조 : 선박을 강제로 정선·퇴거·견인 시 **경찰장비** 등을 사용할 수 있음
- 제47조 : 외국선박이 중국해역에서 불법조업 및 승선검사 거부 시 **휴대용 무기** 사용 가능

* 「중화인민공화국 해경법」 - 해상안전수호, 범죄수사, 경찰장비와 무기 사용 등을 규정

2 육 상

○ **(불법어업) 무허가, 불법어구 적재·사용 및 불법어획물 포획·채취 등**

- 업종별 규정된 어구의 규모·형태·사용량 및 사용방법 등 위반 여부

* 「수산업법」 제41조(무허가), 제41조의3(혼획률), 제64조의2(어구·어법), 「수산자원관리법」 제14조(포획·채취 제한), 제18조(비어업인 포획·채취), 제24조(불법어구 적재)

○ **(불법유통) 불법어획물 보관·유통·판매 및 낚시 조획물 거래 등**

- 포획 금지기간·체장미달 어획물의 재래시장, 도·소매업체 등 유통·판매 등

* 「수산자원관리법」 제17조(불법어획물), 「낚시관리 및 육성법」 제7조의2(낚시 포획 어획물 판매)

○ **(TAC) 할당량·정지명령·어획보고·판매장소 미준수 등**

*「수산자원관리법」 제37조(할당량), 제38조(배분량), 제40조(판매장소)

3 어선법

구분	중점 지도·단속 대상
육·해상	**① 불법 증·개축 행위** - 선체 주요치수(길이, 너비, 깊이) 변경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상부 구조물 및 선미부력부 등 임의 증·개축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② 어선 서류 미비치 및 표시사항 위반 등 - 선박국적증서, 선적증서 또는 등록필증 선내 미비치 - 낚시어선의 복원성 승인 여부 및 복원성 자료 미비치 * 13인 이상 낚시어선 및 배의 길이 24m 이상 어선에 한함 - 어선 검사증서 미비치 - 선명, 선적항, 어선번호판 등 은폐·변경 및 미표시(미부착)
	③ 무선설비 및 어선위치발신장치 미작동 및 고장(분실) 미신고 등 - 어선이 조업하는 해당 조업구역에서 위치확인이 가능한 전파 통달거리*의 어선 위치발신장치를 상시작동 하도록 기준 강화 * (예시) 80km 해역에서 조업하는 경우에는 VHF-DSC(~120km) 또는 AIS(~100km) 중 하나를 반드시 작동하여야 하며 통신범위를 벗어난 V-pass는 인정하지 않음
	④ 어선설비기준 개정에 따른 현장이행 점검 - 화재예방을 위한 10톤 이상의 어선에 화재경보기(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 의무화 및 분말소화기 내구연한 규정(10년) - 사고 시 신속한 구조요청이 가능하도록 10톤 이상 어선의 선원실에 조난발신 장치를 설치하도록 의무화 (이전 조타실만 설치)

3 김 양식장 무기산 사용 특별단속 계획

□ 개 요

○ (기간) 2021. 11. 1 ~ 22. 5. 1(7개월 간)

○ (목적) 국민의 먹거리 안전 위협 및 해양오염을 유발하는 김 양식장 내 무기산 사용 근절을 위한 집중홍보 및 단속

○ (단속대상) 수산자원관리법 제25조에 따라 유해화학물질을 보관 또는 사용한자, 김 양식장 및 어업인 대상 무기산 유통·공급업체

○ (방법) 육·해상 합동 자체 특별단속(홍보 병행)

□ 중점 단속사항

○ 김 양식장 현장 및 항·포구 등 의심 지역 집중점검

○ 무기산 사용 시간(야간, 새벽) 불시 육상·해상 합동 단속(활성처리제 사용 홍보 병행)

4 비어업인 수산자원 포획·채취

□ 주요 점검사항

○ (어구사용) 비어업인이 사용 할 수 있는 어구*를 제외한 어구(잠수용 스쿠버장비 등)로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하는 행위

* 투망, 쪽대, 반두, 4수망, 외줄낚시, 가리, 외통발, 낫대, 집게, 갈고리, 호미, 손

** 「수산자원관리업법」 제18조제2항(비어업인의 포획·채취의 제한)

○ (포획·채취) 수산자원의 포획·채취 금지기간·구역 및 금지체장 위반

*「수산자원관리법」제14조(포획·채취등의 금지), 「내수면어업법」 제21조의2(포획·채취 금지)

○ (유통·판매) 낚시로 포획한 수산동물 판매목적 저장·운반 또는 운반하는 행위

*「낚시관리 및 육성법」 제7조의2(낚시로 포획한 수산동물의 판매 등의 금지)

5 내수면어업법

□ 주요 점검사항

○ **유해어법**(폭발물, 유독물, 전류 등) **이용** :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무면허·무허가 어업**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불법어구*** **이용 포획·채취** 등 유어질서 위반 :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동력기관이 부착된 보트(가솔린, 디젤, 전기모터 등의 동력장치가 부착된 보트), 잠수용 스쿠버장비, 투망, 작살류, 다른 법령에서 제한하는 장비

○ **포획금지 기간·구역·체장 위반** : 1년 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

<포획금지 체장>

품명	다슬기	쏘가리	참게·동남참게	뱀장어	산천어	송어	황복	말조개
체장(cm)	1.5이하	18이하	5이하	15이상~45이하	20이하	12이하	20이하	9이하

* 기수재첩 : 섬진강 각장 1.2cm 이하, 섬진강 외의 내수면 각장 1.5cm이하

6 낚시관리 및 육성법

□ 주요 점검사항

○ **(낚시터*) 무허가·무등록 영업, 허가·등록기준 미충족** 및 **낚시터이용객 안전** 등 **조치**명령 **거부** 또는 **기피, 전문교육 미이수, 출입검사 거부** 등

*「낚시관리 및 육성법」 제10조(허가), 제14조(허가기준), 제16조(등록), 제19조(등록기준), 제20조의2(안전 조치명령), 제47조(전문교육), 제50조(출입·검사)

○ **(낚시어선) 낚시어선업자 불법영업** 및 **이용객 안전 준수**사항 **위반*** 등

*「낚시관리 및 육성법」 제25조(신고), 제29(의무), 제33조(출입항, 승선자명부), 제34조(출항제한), 제35조(조치명령), 제36조(낚시객 준수사항), 제38조(안전성 검사), 제47조(전문교육), 제50조(출입·검사)

○ **(공통사항)** 낚시어선 **감염병 예방지침*** 이행 여부 점검

* 마스크 착용, 발열·호흡기 증상 점검, 손소독제 비치, 거리두기 등

7 면세유류 부정유통 사후관리

□ 주요 점검사항

○ **(점검대상) 관리기관**(수·농협), **주유소**(직영·공급대행), **공급대상 선박·시설·기기**

○ **(주요내용)** 「조세특례제한법」을 위반*한 **면세유류 관리·공급** 및 **사용행위**

* 제106조의2 제9항(부정사용), 제10항(변경신고), 제11항(관리부실), 제12항(부정환급, 양도·양수)

- **(수·농협)** 어업용 면세유류 취급에 대한 관련 절차 규정 준수 여부
- **(주유소 등)** 착색 유무, 출·재고량 일치여부, 양수 및 감면세 부당 편취 등
- **(어업인)** 부정 수급·사용, 공급중단(카드해지) 및 신고사항 변동사유 유무 등
- **(수사의뢰)** 수산물거래실적 허위작성·제출을 통한 면세유류 부당수령

8 기 타

□ 불법어업 신고 안내

○ **불법어업 신고전화 : 1588-5119**

○ **불법어업 신고포상금**

- **(신고대상)** 수산업법, 수산자원관리법, 어선법, 내수면어업법, 양식산업발전법 등의 수산관계법령 위반자*

* 무허가·무면허 조업, 어선의 사용제한 위반(공조조업), 조업구역 및 금지 구역 위반, 어구의 과다사용, 포획금지기간 및 포획금지체장 위반, 불법 어획물 유통·판매 등의 행위자

- **(포상금 지급방법 및 절차)**

불법어업 신고	⇨	현장조사·수사	⇨	포상금 심사위원회	⇨	포상금 지급
방문, 전화(1588-5119), 우편, 팩스, 인터넷 등		신고를 받은 불법어업 신고센터		포상금 지급 대상자 적격여부 확인·결정		불법어업 신고 포상금 지급요청서 제출

* (포상금 지급금액) 포상금액 한도 내

○ **사건처리신호등 운영**

- 서해어업관리단에서 검거한 수산관계법령 위반자의 현재 사건 처리 진행 사항을 알 수 있는 시스템

- 서해단 홈페이지 → 정보공개 →'사건처리신호등'* 게시판에 사건처리 진행 현황 공지

* (● : 사건접수 → ● : 관할 검찰청 이송(송치) → ● : 처리완료)

□ 어업분쟁 조정

○ **(어업분쟁)** 어업·지역 간의 조업 및 어구·어법에 관련된 다툼과 수산자원 관련 다툼 등 어업활동에 관한 분쟁

○ **(조정)** 어업분쟁에 대하여 당사자 간 협의와 화해·타협을 통해 분쟁을 해결

○ **(조정신청)** 서해어업관리단 홈페이지, 전화 및 팩스*

* (H.P) 061-240-7979, (FAX) 061-240-7978

□ SNS(카카오채널) 홍보 추진

○ SNS를 활용한 수산 정책 및 불법어업 사전 예고제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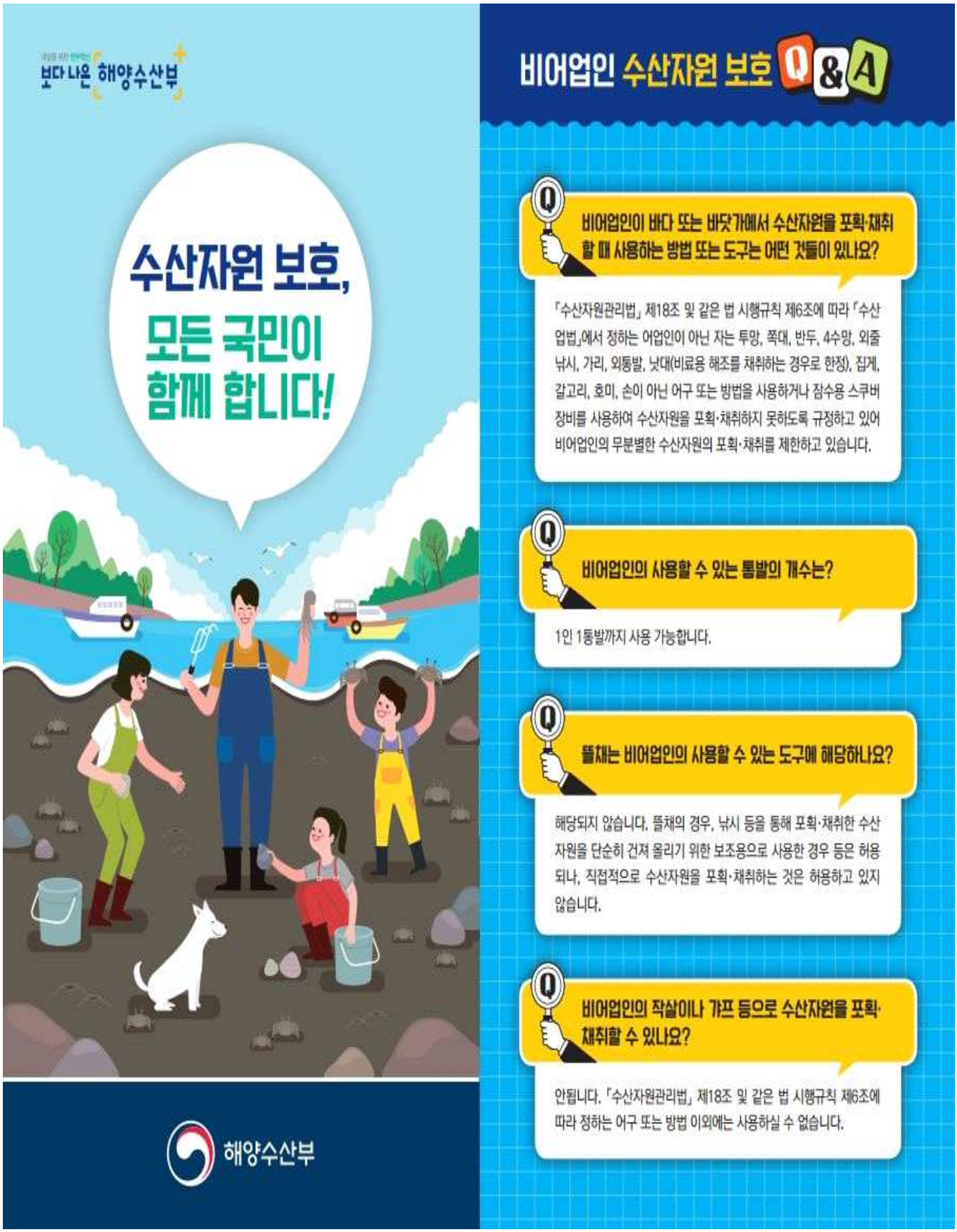
*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도록 SNS를 통한 홍보 공간 마련

○ **주요내용** : ①동・서・남해어업관리단 불법어업 사전예고 안내, ②해양수산부 수산정책 등 정보 공유,③수산관계법령 재・개정에 관한 사항,④불법어업 제보 방법 등 안내,⑤어업관리단 소개 등

붙임 1 **11~12월 주요 포획 금지 어종 및 금지 체장**

어종	금지체장	금지기간	비고
감성돔	25cm	5.1~5.31	
개서대	26cm	7.1~8.31	
고등어	21cm	4.26~5.26	해당 어획량 10% 포획하는 경우 제외 (단, 소형선망 및 제주도 정치망어업은 4월 한달)
꽃게	6.4cm	6.21~8.20	연평도·백령·대청·소청도 주변어장 및 대청도어선 어업구역은 7.1~8.31 / 외포란 연중 포획금지
기름가자미 용가자미 참가지미	20cm		다만, '23.12.31까지는 17cm
문치가자미	20cm	12.1.~익년1.31.	다만, '23.12.31까지는 17cm
쥐노래미	20cm	11.1.~12.31.	
개다시마		11.1.~익년 1.31.	
우뭇가사리		11.1.~익년 4.30.	
넙치	35cm		
넓미역		9.1~11.30	제주도 한정
닭새우	5cm	7.1~8.31	
대게류	9cm	6.1~11.30	
대문어	600그램		
뜸부기		8.1~9.30	
말쥐치	18cm	5.1~7.31.	다만, 정치망어업, 연안어업 및 구획어업은 6.1~7.31.
명태	-	연중포획금지	
백합	각장 5cm	7.1~8.20	
살오징어	15cm	4.1~5.31	근해 채낚기 연안복합 및 정치망 어업 4.1~4.30
새조개		6.16~9.30	다만,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전라남도 (무안과 영광군 제외) 및 제주도는 6.1~9.30까지
연어		10.1~11.30	
전복류		9.1~10.31	다만, 제주도는 10.1~12.31까지
참조기	15cm	7.1~7.31	근해자망어업 중 유자망(유동성그물)을 사용하는 경우 4.22~8.10까지. 다만, 어획량의 10퍼센트 미만 포획·채취하는 경우 제외
참홍어	체반폭 42cm	6.1~7.15	
키조개	각장 18cm	7.1~8.31	금지체장은 부산, 울산, 강원도, 경북, 경남산에 한정
새조개		6.16~9.30.	다만, 부산,울산,경남.전남.제주 6.1.~9.30.
톳		10.1.~다음해 1.31.	
펄닭새우	10cm	6.1~8.31	

붙임 2 **안전하고 건전한 수산물 채취 홍보 포스터**



Q 마을어장에 들어가서 수산자원을 채취하면 어떻게 되나요?

「수산업법」 제8조에 의한 마을어업권은 행정관청의 면허를 받아 공유수면의 일정 구역(수심) 내에서 면허를 받은 종류에 한해 패류, 해조류 또는 정착성 수산동물을 관리·조성하여 배타적으로 포획·채취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 판례는 마을어업 어업권자가 해당 마을어장 내에서 자연 상태로 서식하는 수산동·식물에 대한 소유권이나 점유권까지 취득했다고 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마을어장 내 출입하여 관리 조성하는 수산물 외 자연산 수산물을 포획하는 행위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동 행위가 마을어업권자가 마을어장 내에서 직접 관리 조성한 패류, 해조류 또는 정착성 수산동물을 사전 허가 및 동의 없이 채취하거나, 피해를 입히는 등 「수산업법」에 따라 인정되는 마을어업권을 침해할 경우 법적 다툼으로 연결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Q 야간에 수중에서 수산자원을 채취할 때 필요한 자격증이 있나요?

「수중레저법」에 따라 야간 수중레저활동 시에는 안전을 위하여 아래와 같은 자격 등을 갖추어야 하며, 주간에는 별도의 자격 요건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가. 수중레저교육자 또는 안전관리요원 자격

「수중레저법 시행규칙」 제9조 제2호의 수중레저교육자는 우리부에서 고시* (해양수산부 2019-168호)한 스킨스쿠버 또는 프리다이빙 수중레저교육자 교육인정단체로 부터 수중레저 강사 자격을 취득하여야 하며, 안전관리요원은 강사자격 또는 수중활동 중 비상 시 구조(RESCUE) 과정이 포함된 자격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 수중레저교육자 교육 인정단체 목록(해양수산부 홈페이지-알림-검색)

나. 안전관리요원 동행 입수 가능인원

「수중레저법 시행규칙」 제9조제2호 단서에 따라 수중레저교육자는 단독으로 입수가 가능하며, 「수중레저 안전관리규정*」 제10조 제1항에 따라 5명당 1명 이상의 안전관리요원이 동행하여야 합니다.

* 수중레저법 하위 고시(해양수산부 고시 제2020-40호)

치어랩

치어랩 밴드로 치어를 지키고,
우리의 바다를 지켜주세요.



치어랩 밴드를 해시태그와 함께
SNS에 공유해주세요.

#치어랩 # 치이♥ #치어보호캠페인
#WWF #세계자연기금 #지속가능한바다
#어린물고기지켜주기
#5월10일은바다식목일

치어랩 밴드
사용 방법



① 평소에는 멋진 패션 아이템으로 ② 낚시를 할 때나 마트 시장에서는 물고기를 측정할 수 있는 편리한 자로 치어랩 밴드에 있는 어종과 수치를 확인하고 ③ 어린 물고기는 지속가능한 바다를 위해 놓아주세요.

보다 나은 해양수산부

수산자원 보호, 모든 국민이 함께 합니다!



해양수산부

관련 법령 및 규정

수산자원관리법 제14조(포획·채취금지)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자원의 번식·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수산자원의 포획·채취 금지 기간·구역·수심·체장·체중 등을 정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자원의 번식·보호를 위하여 복부 외부에 포란(抱卵)한 암컷 등 특정 어종의 암컷의 포획·채취를 금지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수산동물의 번식·보호를 위하여 수중에 방란(放卵)된 알을 포획·채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수산자원조성을 목적으로 어망 또는 어구 등에 붙어 있는 알을 채취하는 경우
2. 행정관청이 생태계 교란 방지를 위하여 포획·채취하는 경우

④ 시·도지사는 관할 수역의 수산자원 보호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제1항의 수산자원의 포획·채취 금지기간 등에 관한 규정을 강화하여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산자원의 포획·채취 금지 기간·구역·수심·체장·체중 등과 특정 어종의 암컷의 포획·채취금지의 세부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수산자원관리법 제18조(비어업인의 포획·채취의 제한)

① 「수산업법」 제2조제12호에서 정하는 어업인이 아닌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을 제외하고는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수산업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어업인이 아닌 자는 제14조를 위반하여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해서는 아니 된다.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비어업인의 포획·채취의 제한)

법 제18조에 따라 「수산업법」 제2조제11호에서 정하는 어업인이 아닌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어구 또는 방법을 사용하거나 잠수용 스쿠버장비를 사용하여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하지 못한다.

① 투망 ② 쪽대, 반두, 4수망 ③ 외줄낚시(대낚시 또는 손줄낚시) ④ 가리, 외통발 ⑤ 낫대[비료용 해조(海藻)를 채취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⑥ 집게, 갈고리, 호미 ⑦ 손

수산자원관리법 제6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5조에 따른 조업금지구역에서 어업을 한 자
2. 제18조제1항을 위반하여 비어업인으로서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한 자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별표17

위반행위	해당 조문	과태료 금액
다. 법 제18조제2항을 위반하여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하였을 경우	법 제70조 제2항제1호	80만 원

금어기, 금지체장 관련 용어 정리

금어기

특정 어종에 대한 포획·채취 금지기간으로 이 기간 동안 해당 어종에 대한 어업활동과 유어·낚시 등이 금지됩니다.

※ 휴어기 : 해역별 또는 어업별로 정하며 해당기간 동안 특정해역에서 어업활동을 하지 않거나 특정어업은 해당기간 동안 어업활동을 하지 않음(어종 한정X)

금지체장(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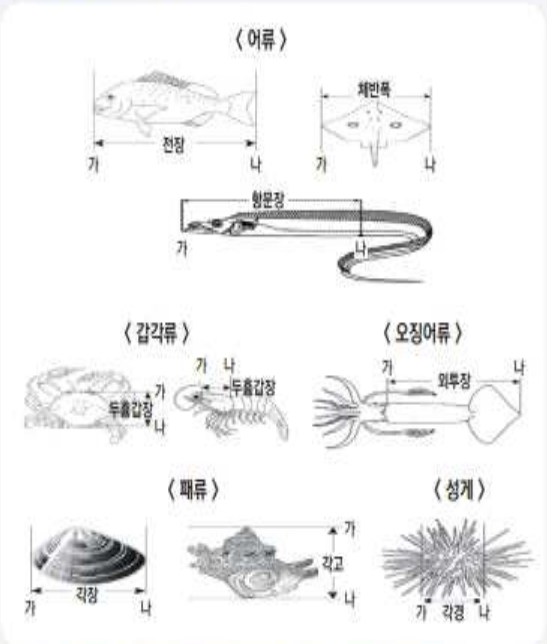
특정 어종에 대한 포획·채취 금지체장(몸길이)·체중(무게)으로 정해진 측정 방식에 따라 해당 크기 이하는 포획이 금지됩니다.

군성숙체장

어린물고기 보호를 위해 개체군의 50%가 산란하는 체장으로 성숙개체와 미성숙개체를 구분하는 기준이 됩니다.

- 군성숙체장을 기준으로 금지체장을 설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자원수준, 어종특성 및 어업현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반영합니다.

수산동물의 체장계측도



※ 어종별 금어기, 금지체장 등에 대한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검색 후 '별표 1, 별표 2'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수산자원 보호의 개념

수산자원관리란?

국민경제 및 국민 생활에 유용한 자원인 수중 동·식물의 보호·회복 및 조성 등의 행위를 말합니다.

〈수산자원관리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산자원"이란 수중에 서식하는 수산동식물로서 국민경제 및 국민생활에 유용한 자원을 말한다.
2. "수산자원관리"란 수산자원의 보호·회복 및 조성 등의 행위를 말한다.

비어업인이 지켜야할 수산자원 보호 규정

수산자원을 지키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비어업인이 수산자원을 보호하면서 적법하게 포획·채취하려면 다음 사항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 **비어업인은 수산자원 포획·채취 시 정해진 어구 또는 방법만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를 어기면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비어업인이 사용 가능한 어구 또는 방법〉

투망, 쪽대, 반두, 4수망, 외줄낚시(대낚시 또는 손줄낚시), 가리, 외통발, 낫대(비료용 해조를 채취하는 경우로 한정), 집게, 갈고리, 호미, 손

* 잠수용 스쿠버 장비는 사용하지 못함(다만, 수경, 숨대롱, 잠수복 및 잠수모, 호루라기, 오리발 착용은 가능하며, 칼의 경우 수산자원의 포획·채취에 사용하지 않고 안전을 목적으로 소지하는 경우는 허용)

- **비어업인도 수산자원의 번식, 보호를 위해 금어기, 금지체장 등을 알고 지켜줘야 합니다.**

「수산자원관리법」 개정('20.3.24)으로 비어업인도 금어기, 금지체장 등을 위반하여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하면 과태료 80만 원 부과('20.9.25부터 시행)

비어업인 주요 불법 도구



개불펌프

갯벌 속의 개불 등을 펌프를 이용해 흡입하여 채취

✕사용 금지✕



게그물

낚시 등 어구에 매달아 꽃게 등 채취

✕사용 금지✕



작살

뾰족한 쇠꼬챙이로 생물 등의 살갗을 꿰어 포획

✕사용 금지✕



납벨트

잠수용 스쿠버 장비로서 수산자원 포획·채취 시 착용 불가

✕사용 금지✕



칼

안전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만 소지 가능

(수산자원 포획·채취 용도는 불가)

⊖안전목적으로만 사용⊖

붙임 3 **어선법에 따른 어선위치발신장치 종류**

구 분 명칭	사 진	설치근거	설치 대상 어선	기 능	특 징	관제 기관
선박패스장치 (V-Pass)		- 어선법 제5조의2 (어선위치발신장치)	전 어선 (타 어선위치 발신장치 설치시 제외)	어선 자동 출입항 신고	위치발신 ○ 조난발신 ○ 음성통신 × 통신거리 : 30㎞	해경
초단파대 무선설비 (VHF-DSC)		- 어선법 제5조 (무선설비) - 어선설비기준 제349조 (무선설비적용대상)	2톤 이상	음성 및 데이터 통신	위치발신 ○ 조난발신 ○ 음성통신 ○ 통신거리 : 100㎞	수협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단말기 (e-Nav)		- 지능형해상교통정보법 제18조(단말기설치) - 동법 시행령 제4조 (설치면제선박)	3톤 이상	음성 및 데이터 통신	위치발신 ○ 조난발신 ○ 음성통신 ○ 통신거리 : 100㎞	해수부
디지털선택호출장치를 포함한 중단파대 무선전화 및 단파대 디지털 송수신장치 (D-MF/HF)		- 어선법 제5조 (무선설비) - 어선설비기준 제349조 (무선설비적용대상)	근해 어선	음성 및 데이터 통신	위치발신 ○ 조난발신 ○ 음성통신 ○ 통신거리 : 1,500㎞	수협
선박자동 식별장치 (AIS)		- 어선법 제3조 (어선의설비) - 어선설비기준 제188조 (자동식별장치)	10톤 이상	선박 충돌 예방	위치발신 ○ 조난발신 × 음성통신 × 통신거리 : 80㎞	해수부
중단파대 및 단파대무선설비 (무선전화 및 디지털 선택호출장치)		- 어선법 제5조 (무선설비) - 어선설비기준 제349조 (무선설비적용대상)	원양 어선	음성 통신	위치발신 ○ 조난발신 × 음성통신 ○ 통신거리 : 1,500㎞	수협